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창원)2017누11742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구합50841 판결
변론 종결	2019. 8. 21.
판결 선고	2019. 9.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8. 원고에게 한 취득세 334,831,200원, 지방교육세 24,373,950원의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설령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추징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0-23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현물출자를 통하여 이 사건 법인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 · 착오에 불과하여 위에서 본 구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6033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1. 선고 2018누3449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용

판사 안좌진

판사 서범욱